원세훈(전 국정원장) 사건 개요

1. 사건진행 개요

- 사건 : 서울중앙 2013고합577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 재판부 : 형사21부(재판장 : 이○○ 부장판사)
- 공소제기(불구속) : 2013. 6. 14. (알선수재 사건으로 구속, 실형선고)
- 진행 상황 : 공판절차 계속 중

- 2013. 8. 26.부터 2014. 6. 30.까지 36회의 공판기일 진행
- 2014. 7. 14. 37회 공판기일 변론종결

- 2014. 9. 11. 판결선고 예정

2. 공소사실

가. 당초 공소장

▣ **이 사건 공소장은 다음과 같이 7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제1항 : 피고인의 지위와 경력
- 제2항 : 국정원의 직무범위
- 제3항 : 피고인의 국정원 운영 방침
- 제4항 : 사이버 국정홍보의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 제5항 :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지시
- 제6항 :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범행 내역

-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심리전단 소속 4개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이
-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와 같이 총 5,694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

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함

- 그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범죄행위를 실행함과 아울러

-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목적의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개입 범죄행위를 실행함

● 제7항 : 결어

- 피고인, 3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 팀장 및 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함

●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는 공직선거법위반(255조 3항 2호), 국정원법위반(18조 1항), 공동정범(형법 30조), 상상적경합(형법 40조)임

- 범죄일람표 기재 약 3년간의 5,694회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봄

나. 제1차 공소장변경

▣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범죄사실은 위 '제6항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트위터를 이용한 범죄사실'**

● 사이버팀 직원 김○○이 2012. 9. 1. 트위터 계정에 '민주, 안철수, 보조금 152억 받으려 눈속임 정당 만드나…'라는 글을 게시함을 비롯하여, 2012. 9. 1.부터 2012. 12. 18.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서 5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함과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 **공소장 변경 허가**

● 2013. 10. 30.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공소사실 자체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지, 유무죄 또는 범죄성립 가부 판단을 한 것 아님

다. 제2차 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제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일부 철회.변경 및 추가함**

- 범죄일람표(1), (2), (3), (4)를 일부 축소 및 대체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5)의 55,689건을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해당 범죄일람표 (5) 647,443건과 정치관여(비선거운동) 범죄일람표 (6) 562,785건으로 교체 및 추가
- 트위터 관련 선거운동 건수를 55,689건에서 647,443건으로 변경함

▣ **공소장 변경 허가**

- 재판부 2013. 11. 28. 제2차 공소장 변경 허가결정
- "기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의 동일성 인정"
- 변호인 측의 공소사실 자체의 불특정 주장에 대하여는 "최종 판단에서 고려할 것"

라. 제3차 공소장변경

▣ **공소사실 제6항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에 의한 범죄 실행 부분'을 다시 축소함**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 (5) 정치관여 및 선거운동 건수를 647,443건에서 44만 6천여 건으로 축소
- 트위터 관련 범죄일람표 (6) 정치관여(비선거운동) 건수를 562,785건에서 33만 9천여 건으로 축소
- 총 전체 계정 2,600여개 121만여건에서 계정 1,100여개 78만여건으로 정리

▣ **공소장변경 허가**

- 재판부 2014. 6. 16. 제34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 허가결정
- 3차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큰 다툼이 있지 않음

3. 주요 쟁점

▣ **실체적 쟁점**

-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의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 검찰에 의하여 지목된 트위터 계정들이 실제로 국정원 직원들의 계정이 맞는지
-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 **절차적, 증거법적 쟁점**

- 공소사실로 적시된 수많은 트위터 계정 등 구체적 범행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는지
- 증거로 제시된 트위터 계정들에 대한 정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4. 향후 전망

가. 총론

▣ **증거능력에 관하여는 공판절차에서 일부는 증거능력을 부인하였으나 일부는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음**

▣ **실체적 판단이 쟁점을 될 것으로 보임**

나. 증거능력 관련 쟁점

1) 재판부의 판단

▣ **2014. 5. 19. 판단 (제31회 공판기일)**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수집한 트위터 관련 정보 (일부 증거능력 부인)**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트윗 관련정보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받아 증거로 신청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

● 다음소프트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다음 아고라 글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다만,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으로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트위터 자료를 검찰이 증거로 신청한 것은 적법함

- 변호인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사실조회를 신청했더라도 검찰이 증거로 신청할 수 있음

▣ **압수수색 영장에 의한 빅데이터 업체로부터의 압수정보 (일부 증거능력 부인)**

●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463개 계정 명의로 작성된 트윗글, 리트윗 등만 증거능력 인정

- 검찰은 463개를 초과한 599개 계정을 기초로 2270개 계정의 트윗글 전부를 임의 제출받았음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받은 트윗 관련증거는 트위터 본사의 정보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 : 받아들이지 않음**

▣ **2014. 6. 30. 판단 (제36회 공판기일)**

▣ **트위터팀 직원 김○○의 이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 문서의 증거능력 부인**

● 원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

- 문서에는 이 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직원 이름 및 김○○이 언제 어디서 트위터 활동을 했는지 등이 기록되어 있음

- 진술증거라는 이유로 전문법칙 적용함 (야당과 검찰 측의 비판 : 트위터 계정 명칭 등이 단순히 적혀있는 일종의 장부 같은 비진술증거임,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음)

2) 재판부 판단의 의미 (재판에의 영향)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받은 트윗 관련 증거 자체는 인정**

● 트위터 본사에 대한 국제사법공조 불발에 따라 본사로부터 압수수색은 되지 않았음 (계정의 동일성과 완전무결한 증거)

● 다만, 국내의 빅데이터 업체에 등재되었던 간접적인 증거가 증거가 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

- 다만, 위 증거에 의하면 해당 계정에서의 트윗글의 내용은 나타나지만, ID 소유주 등 계정정보를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확보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

- 질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양적인 문제임
- 증거수집 과정에서 임의제출 받은 증거 및 영장을 초과하여 압수한 증거의 증거능력 부인
- 그러나 사실조회를 통한 증거 및 영장기재 압수증거 등 일부 증거는 증거능력 인정받음

▣ **김○○ 작성 이메일의 첨부문서 증거능력 부정**

- 해당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

- 팀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직원 이름 및 김○○이 언제 어디서 트위터 활동을 했는지 등

-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한 내용의 직접증거가 날아간 셈임

-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된 마당에 해당 트위터 계정이 국정원이 관리하던 계정인지를 입증하기가 어려워짐

- 위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려던 트위터 계정이 전체 계정 중 약 70%에 달한다고 함

다. 실체적 쟁점

▣ **검찰이 주장하는 트위터 계정들 자체가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맞는지 여부**

- 트위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발되었고, 해당 트위터 계정들이 국정원이 관리하던 계정임을 입증하기 위한 이메일 첨부문서가 증거능력 부정
- 현재 공소장 기재 계정 (약 1,100여개) 전부가 국정원 관리 계정으로 인정되기는 여려울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최종적인 제3차 공소장변경은 검찰이 2014. 2. 신청하여 2014. 6. 허가된 것임

- 검찰의 최종 공소상변경신청 이후인 2014. 5. 19. 및 2014. 6. 30. 상당수의 증거가 증거능력이 부정되었음

▣ **기재된 내용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판례(2013도4146 등)는 선거운동을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라고 하여 규범적 개념으로 보고 있음

● 한편, 김용판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 2014노530)에서도 위와 같은 규범적 의미를 해석하면서, 공소사실 자체로 김용판의 수사방해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이 사건의 경우 김용판 사건과는 내용이 다르지만, 인터넷 게재 내용이 전부 '선거운동'으로 판단될 수 있을지 여부는 행위태양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되어야 할 것임

▣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행하여진 행위인지 여부**

● 공직선거법상 구성요건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

●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상 또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대목임

● 앞서 본 국정원이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트위터 계정의 숫자, 사용횟수 등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을 것임

▣ **국정원장으로서의 정당한 직무범위를 일탈한 행위인지 여부**

● 국정원법위반(정치관여) 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선거운동이 인정되는지 여부와도 전반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재판부 관련 참고사항

▣ 해당 재판부 (서울중앙 형사21부)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 담당 재판부였음

▣ 김용판 사건에서 권○○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 무죄선고한 바 있음